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2

발의연월일: 2020. 7. 1.

발 의 자: 박덕흠 · 김도읍 · 엄태영

추경호 • 이종배 • 권성동

김용판 · 김예지 · 정점식

김석기 · 이종성 · 류성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있고,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법률 제 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제30조(과태료) ①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	
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	<u>500</u> 만원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